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민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
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 서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.

지난 2월 3일 신설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
제54조(감독 등)는 “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

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·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민간 사업자가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 서류와 인계시기는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위임에 따른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규정과 동일하게

이전고시, 등기신청, 회계 및 계약, 감사 관계 서류 등 11종을

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

규정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